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11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기업이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PIT 비용에 대한 CIT정책
- 기업의 소득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외에 외주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 본사와 다른 지방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대한 CIT 배분
- 과학 연구 협력 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CIT 면제

간접세 ("Indirect Tax")

- 조정 및 대체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 VAT 신고
-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VAT
- 수출품에 대한 VAT 인보이스 발행 시점
- 수출가공 기업 (EPE)으로 전환 전에 발생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 VAT
- 기업이 분할될 경우 및 같은 기업내 단위간 자산 양도에 대한 VAT

개인소득세 ("PIT")

- 분기별 PIT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세금 과태료
- 부양 가족에 대한 안내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기금에서 출연 지출에 대한 PIT
- 외국인 전문가의 PIT

외국인계약사제 ("FCWT")

- FCWT 계산 목적을 위한 환율 결정
- 운송 할증료에 대한 FCWT
- FCW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

무역 및 관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라 재생산품 수입
- 수입물품에 대한 C/O Form D 제출 안내
- 중고품 수출 절차 안내
- 수입관세 환급을 위한 지급증빙서류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의 위탁수입 안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법인세 (“CIT”)

지침 문서

기업이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PIT 비용에 대한 CIT정책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PIT를 제외함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업이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PIT 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조세총국의 2023년 10월 18일 제 4619/TCT-CS 호 OL)

기업의 소득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소득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 지역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운 경제 사회적인 지역등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내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므로 인해 기업의 소득
-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예금이자, 대출이자,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인센티브 적용된 지역외에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소득을 얻은 투자 프로젝트는 지역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19일 제 4626/TCT-CS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 문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 외 에 외주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받은 산업단지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 외 에 외주가공업체에게 가공을 의뢰할 경우 해당소득은 투자우대지역 조건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3년 9월 15일 제 4083/TCT-CS 2023 호 OL)

본사와 다른 지방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대한 CIT 배분

본사와 다른 지방에 제조공장이 있는 기업은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다음과 같이 CIT를 배분한다:

- 제03/TNDN호 양식으로 전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CIT 확정신고서 및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3-8/TNDN호 양식 및 제03-8B/TNDN호 양식으로 다른 지방에 CIT 배분하는 부록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제출한다.
-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분된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Hanoi 세무국의 2023년 9월 12일 제 65973/CTHN-TTHT 호 OL)

과학연구협력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CIT 면제

과학연구기술개발계약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은 계약수행 중 과학기술규정에 따라 CIT가 면제되나, 최대 3년간 CIT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CIT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과학연구기술개발계약의 수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함.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계약을 이행함.

(Hanoi 세무국의 2023년 10월 5일 제 71493/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조정 및 대체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 VAT 신고

기업은 잘 못 신고되거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매입 VAT 인보이스를 발견할 경우 인보이스를 발생한 시점으로 수정 신고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약에 추가 신고는 잘 못 신고된 기에서 다음기로 이월공제될 VAT세액 (기준 43)만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 회사가 차이 세액을 현재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서에 감소조정 (기준 37) 또는 증가조정 (기준 38)으로 신고해야 한다.

(Quang Nam 세무국의 2023년 10월 4일 제 7445/CTQNA-KK 호 OL)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VAT

정부의 2023년 6월 10일 제44/2023/NĐ-CP호 시행령의 부록 I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부동산 서비스 (코드 6810)는 VAT 8%를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27일 제 76782/CTHN-TTHT 호 OL)

수출품에 대한 VAT 인보이스 발행 시점

기업은 외국 법인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전자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VAT 인보이스 발행시점은 수출품 통관 절차가 완료된 후 이다.

참고: 그전에 기업은 출고전표 및 내부운송 증빙서류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 다만 현재에는 이접근방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VAT 인보이스는 상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에야 발행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11월 02일 제 4890/TCT-KK 호 OL)

수출가공 기업 (EPE)으로 전환 전에 발생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 VAT

기업이 수출가공 기업 (" EPE ")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 VAT는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하다.

회사가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와 동일한 마감일까지 EPE 세금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마지막기에 대한 VAT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19일 제 4627/TCT-CS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기업이 분할될 경우 및 같은 기업내 단위간 자산 양도에 대한 VAT

**시나리오 1 – 같은 기업내 종속 단위간의
또는 기업이 분할될 경우 자산 이전**

- 기업은 자산 이전 명령서 및 관련 지원서류의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 인보이스는 필요가 없다.

**시나리오 2 – 독립적인 회계 단위간 또는
같은 조직내에 100% 소유하는 단위 간에
현재 사용 중이며 감가상각을 실시되어
있는 자산 이전**

- 자산 수령자는 VAT 적용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VAT 인보이스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VAT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자산 수령자는 VAT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VAT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Ha Noi세무국의 2023년 10월 27일 제
76785/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 소득세 (“PIT”) 지침 문서

분기별 PIT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세금 과태료

외국 조직한태서 임금소득을 받은 거주자인 납세자는 세무국에 직접 분기별로 PIT 잠정신고, 납부 및 연말 PIT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가 이전 과세 연도에 분기별 납부할 세금을 발생했지만 분기별 PIT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탈세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무국은 2022년 7월 27일 제792/QD-XTHC호 결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2012년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 (2020년 개정됨)의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의 위반 행위가 2015년 형법 제200조 (2017년 개정, 보완)의 1항 a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국은 법규정에 따라 따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케이스를 관할당국에 이전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2월 27일 제 560/TCT-PC 호 OL)

부양 가족에 대한 안내

납세자가 손자녀 (손자녀의 부모가 아직 근로 연령 중이며 여전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 대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안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26일 제 4758/TCT-DNNCN 호 OL)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기금에서 출연 지출에 대한 PIT

2012년 6월 20일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명시된 특정 업무를 충족하는 노동조합 기금에서 출연된 직원지출 (추석절, 국제 여성의 날 등)은 PIT과세 임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출이 PIT과세 임금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Ha Nam 세무국의 2023년 10월 16일 제/3010/CTHNA-TTHT 호 OL)

외국인 전문가의 PIT

베트남에 1년동안 183일 미만 거주하여 비과세 거주자로 확인된 외국인 전문가는 PIT 고정 세율 20%가 적용되며 베트남을 떠날 때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거주 상태의 변경으로 인해 납부세액과 실제 세금이무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가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의 PIT 신고서를 수정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가가 초과 납부 세액을 환급 받기위해 재무부의 제80/2020/TT-BTC호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세금 환급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10월 19일 제/24509/CTBDU-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FCWT 계산 목적을 위한 환율 결정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율을 올바르게 결정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지급되는 FCWT의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 시 결제 지정 상업은행의 매입환율로 한다 한다.
-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구매되지만 아직 대금지급되지 않은 자산 또는 비용에 포함된 FCWT의 경우:** 거래 당시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상업은행의 판매환율로 한다.
- **외국 계약자로부터 구매되어 즉시 외화로 지급된 자산 또는 비용의 가치에 포함된 FCWT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상업은행의 매입환율로 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23일 제4666/TCT-CS호 OL)

운송 할증료에 대한 FCWT

베트남 외부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운송 서비스에 대한 할증료소득 (해상 운임 이외의 요금) 을 얻는 외국 단체는 해당 소득에 FCWT가 적용되지 않다.

다만 할증료가 베트남 내에서 수행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에는 FCWT가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0월 4일 제71228/CTHN-TTHT호 OL)

FCW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

납세자가 FCWT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25/2020/ND-CP호 시행령 제17조 제1항 a점에 따라 탈세 행위로 확정되면 허위신고행위로 전환될 수 없다.

이는 규정에 따라 탈세 제재 또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7월 11일 제2865/TCT-PC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and Customs")

신규 규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라 재생산품 수입

2023년 11월 2일에 베트남 정부는 CPTPP에 따라 수입이 허락된 재생산 제품 (HS 코드 포함) 목록과 재생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제77/2023/ND-CP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PTPP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 허락된 재생산 제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본 시행령의 부록 I, II, III, IV, V에 발표된 목록에 속하며 정보통신부, 보건부, 교통부, 산업통상부, 농업·농촌개발부 등 각 부처의 관리 권한에 해당한다.
 - ✓ 전체 또는 일부가 회수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 ✓ 동일유형의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 수명을 가져야 한다.
 - ✓ 동일유형, 유사한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신규 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및
 - ✓ 동일유형의 신제품에 적용되는 보증제도와 유사한 보증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재생산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본 시행령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를 있다;
 - ✓ CPTPP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 및
 - ✓ 동일유형의 신제품에 적용되는 베트남 법규정 및 전문 법령의 모든 관련 규정 (예: 제품 라벨링, 품질, 표준,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등) 조건을 충족한다.
 - ✓ 재생산 기업 (해외) 또는 상표 소유자는 재생산 능력, 보증 및 상표 사용권을 증명하기 위해 본 시행령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재생산 코드를 받아야 한다. 재생산 코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최대 5년이다.

(정부의 2023년 11월 2일 제77/2023/ND-CP호 시행령)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and Customs)

지침 문서

수입물품에 대한 C/O Form D 제출 안내

수출국의 C/O 발급 기관에서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자 시스템에서 C/O e-Form D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과 관련한 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세관 관리감독국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 제10/2022/TT-BCT호 시행규칙 제1조, 12항, 부록 I 에 따라 세관당국은 종이 C/O 및 전자 C/O e-Form D를 모두 허락한다. 따라서 세관당국은 국가 싱글윈도우 시스템에서 전자 C/O e-Form D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제10/2022/TT-BCT호 시행규칙의 부록I 제7조 4항에 따라 수동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날인한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C/O 신고 및 제출 절차는 제33/2023/TT-BTC호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총국-세관관리감독국의 2023년 10월 12일 제1617/GSQL-GQ4호 OL)

중고품 수출 절차 안내

2023년 11월 2일에 호치민 관세국은 중고품 수출 절차를 안내하는 제3119/HQTPHCM-GSQL호 OL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기업은 관련 관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을 근거하여 제품의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 ✓ 무역계약 및 서류 (수리, 복원 또는 폐기 등 수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함)
 - ✓ 실제 제품
 - ✓ 바젤 협약의 조항, 및
 - ✓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적 문서.
- 수출품이 유해 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제 02/2022/TT-BTNMT 호 시행규칙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 시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 수출품이 유해 폐기물이 아닐 경우 (예: 수출 물품이 환경보호법 및 대외 무역 관리법에 따라 수출 금지 대상이 아닌 폐기물 또는 중고 물품등인 경우) 기업은 환경 보호법, 대외 무역 관리법 및 전문 부처의 기타 지침 문서상 규정된 수출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3년 11월 2일 제3119/HQTPHCM-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and Customs)

지침 문서

수입 관세 환급을 위한 지급증빙서류에 대한 요건

2023년 10월 16일에 세관총국은 수입 관세 환급 신청 서류에 지급증빙서류에 대한 요구 사항에 관한 제 5334/TCHQ-TXNK호 OL로 Ba Ria-Vung Tau 세관국에게 회신하였다. 구체적으로:

- 2021년 3월 11일자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 1조 20항 d점에서 수정, 보완된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6조 5항에 따르면 생산 및 사업을 위해 수입되었던 물품이 수출된 경우, 세금 환급서류에는 수입 물품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 1부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지급된 경우).
- 또한, 제38/2019/QH14호 조세행정법 제73조 2항 e점에 따라, 은행을 통해 대금 지급되지 않는 수입 물품의 경우, 세금 환급신청서류는 환급 전 심사 대상이다.
- 은행을 통한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 38/2015/TT-BTC호 시행규칙과 발표된 부록 VII의 4.1항에서 규정된다.

(세관총국의 2023년 10월 16일 제5334/TCHQ-TXNK호 OL)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의 위탁수입 안내

2023년 10월 27일에 세관총국은 다음과 같이 수입허가 대상인 물품의 위탁 수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 5548/TCHQ-TXNK호 OL를 발표하였다.

- 수출입 허가 대상인 민간 암호화 제품 목록에 속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정부암호위원회 (국방부)에 의해 수입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 기업이 수입 허가 대상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위탁받은 측은 2017년 대외 무역 관리법 제50조 2항에 따라 수입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위탁받은 측이 위탁자의 허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 시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0월 27일 제 5548/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8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손원식 회계사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